

미해결민원 일제 정리 추진지침

— 민원해소 50일 작전 —

1. 목 적

- 국민의 불만요인이 되는 각종 미해결민원의 적극 해소로 국민의 대정부 신뢰제고

2. 기본방침

- 미해결민원의 일소를 목표로 범정부적 특별해소노력 추진
- 기관별로 기관장 책임하에 민원해소특별대책반을 설치·운영
- 해결불가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 및 재발방지책 강구
- 추진상황에 대한 수시점검·확인으로 일제정리 성과 제고

3. 세부추진계획

- 일제정리 추진기간 : 92.10.5. ~ 11.23(50일간)
- 대상민원 : 9.30 현재 민원사무 처리기준법상의 처리기간보다 1개월이상 처리가 지연된 인.허가, 승인, 진정, 질의, 건의, 이의신청등 모든 민원(추진기간중 1개월이 경과된 민원도 대상에 추가)
- 민원해소특별대책반 설치·운영
 - 설치기관 : 각급 민원처리기관 단위별로 설치
 - 기 능
 - . 기관별 민원 일제정리 추진상황점검 및 대책협의
 - . 처리곤란 민원사항에 대한 기관차원의 해소방안강구등
 - 구 성
 - . 반 장 :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
 - . 반 원 : 민원업무관련 주요 부서장 및 지원부서장
 - . 운영주관(간사) : 민원업무총괄 부서장
- * 민원행태 쇄신운동실천반이 기설치된 기관의 경우 통합운영가능

- 처리불가 민원대책
 - 현행 법령상 수용 불가능하나 타당성 있는 민원의 경우 제도개선방안 검토
 - 수용 절대불가능한 민원의 경우 불가사유 명시 및 차선의 대안제시로 설득.이해종결 및 재발방지책 강구
- 각급행정기관별 조치사항
 - 미해결민원 현황조사 및 처리계획수립 : 92.10.2한
 - . 미해결민원 처리부 별도 작성관리
 - 사안별 발생원인.추진상황을 분석, 조기 해소방안 강구
 - 민원해소특별대책반 설치.운영
 - . 운영주관부서 지정
 - . 감사업무 관장부서에서 추진상황 확인 및 지원
- 일제정리 추진상황 확인점검
 - 각종양행정기관별로 소속기관 추진상황 지도.점검
 - 국무총리실과 정부합동민원실 합동으로 수시.불시방문 확인 실시

4. 행정사항

- 각급 중앙행정기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미해결민원 일제정리 결과를 별첨서식에 의거, 92.12.5까지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에 통보
 - 기관별 미해결민원 일제정리실적 : 서식 1
 - 민원분야별.처리결과 유형별.지연기간별 통계 : 서식 2
 - 미해결민원 사안별 내역 : 서식 3
- 총무처장관은 이를 취합하고, 각기관별 일제정리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보고

1. 민원해소 특별대책반 운영실적

- 대책회의등 운영회수 :
- 심의건수 :
 - . 해결건수 (충족. 대안) :
 - . 미해결건수 :

2. 일제정리결과 주요사례 (대표사례 1개씩 개조식으로)

- . 해결(요구사항 충족) :
- . 해결(조정대안 제시) :

3. 해결불가 민원내용 및 향후대책

- 해결불가 민원의 유형별 구체적 사례(대표사례 1개씩 개조식으로)
 - . 소송 등 계류 :
 - . 법령제도상 수용불가 :
 - 법령제도상 수용불가하나 법령. 제도를 개선하여 수용타당성이 있는 민원 :
 - .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 :
 - . 예산. 재정상 애로 :
 - . 조희. 협의. 질의중 :
 - . 정부시책의 일관성 유지 :
 - . 사인간의 분쟁사항 :
- 향후대책 :

4. 일제정리 실태 점검실적

- 점검회수 및 일시 :
- 조치내역 :
- 점검 특기사항 :

※ 필요시 관련자료 첨부

【서식 2】

1. 민원분야별 통계

구분	계	건축 도시 계획	농림 · 수산	교육 문화 인사	복지 환경	재정 세무	상공 전도 수도	내무 행정	호· 병· 적· 보· 훈	교통 체신	민· 형사	노동
계												
해결												
미해결												

2. 민원종류별 통계

구분	계	인가	허가	승인	등록	신고	질의	진정	건의	이의 신청	기타
계											
해결											
미해결											

3. 처리결과 유형별 통계

구분	해결			미해결								
	소계	요사항 충족	조정 대안 제시	소계	소송 계류	법령 제도상 수용불 가	민원인 무리한 요구	예산 재정상 애로	조협 질	회의 의	정부 정책의 성 의 유지	사인간 의 분 쟁
계						()						

※ ()은 현행 법령. 제도상 수용불가하나 법령. 제도를 개선하여 처리할 필요성(타당성)이 있는 민원건수

4. 지연기간별 분류

구분	1 ~ 3개월	3 ~ 6개월	6개월 ~ 1년	1년 이상
계				
해결				
미해결				

* (서식3)의 작성요령

- 1) 번호 : 기관별 작성대상민원의 일련번호 부여
- 2) 구분 : 인가.허가.승인.등록.신고.진정.질의.건의.이의신청.기타
- 3) 접수일 : 대상민원의 최초접수일
- 4) 주소.성명 : 민원인의 주소.성명을 기재, 복수일 경우 대표자 주소.성명외
○명으로 기재
- 5) 분야 : 민원분야별 번호 기재
 1. 노동
 2. 복지.보건.환경
 3. 건축.도시계획
 4. 농림.수산
 5. 재정.세무
 6. 상공.전기.수도
 7. 교통.체신
 8. 민.형사
 9. 호.병적.보훈
 10. 교육.문화.인사
 11. 내무.행정
- 6) 제목 및 요지 : 민원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기재
- 7) 처리경위 : 접수 후 처리지연사유 기재
- 8) 미해결사유 : 미해결사유의 유형별 해당번호 기재

< 보 기 >

 1. 소송등 계류
 2. 법령제도상 수요곤란
 3.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
 4. 예산.재정상 애로
 5. 조회.협의.질의
 6. 정부시책의 일관성유지 필요
 7. 사인간의 분쟁
- 9) 처리계획 : 앞으로의 처리계획 기재
- 10) 비교 : 기타 참고사항